



교육감 규정

번호: D-210

제목: 뉴욕시 및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 품행 수칙 및 불만제기 절차: 차별 방지 및
괴롭힘 방지 정책

항목: 뉴욕시 및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

발행: 2021년 12월 22일

어드바이저리(2024년 8월 28일 발행)

교육감은 상세 검토를 위해 유예된 이 규정의 섹션 II(C) 및 (D)의 집행을 보류합니다. 섹션 II(C)는 위원회 멤버가 위협적이고 타인의 안전을 우려하게 되는 잦은 언어적 학대와 불필요하게 공격적인 언사를 포함하고 이에 국한되지 않은 괴롭힘, 위협 또는 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섹션 II(D)는 위원회 멤버가 교육청 학생에게 경멸스럽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포함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교육감 규정

번호: D-210

제목: 뉴욕시 및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 품행 수칙 및 불만제기 절차: 차별 방지 및
괴롭힘 방지 정책

항목: 뉴욕시 및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

발행: 2021년 12월 22일

요약

이 규정은 커뮤니티 및 뉴욕시 위원회의 선출 및 임명 멤버의 품행에 대한 뉴욕시 교육청의 차별 방지 및 괴롭힘 방지 정책을 규정하며 이 규정 위반에 대한 불만 제기 접수 및 해결 절차를 수립합니다.

서론

뉴욕시 교육청("교육청")은 학부모 리더십 및 참여가 뉴욕시 학교의 초석임을 인지합니다. 선출 및 임명 학부모 리더를 위해 차별, 괴롭힘, 편견, 인종차별, 위협이 없는 긍정적이고 지원적인 환경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이 교육청의 정책입니다. 교육청은 모든 학부모를 존중하고 품위를 지켜 대하며 공평하고 공정한 참여와 학부모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교육청은 학부모 리더십의 다양한 인종적, 언어적, 문화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역사적으로 대변되지 못했던 목소리를 고양시키고 주목하며 학부모를 사회 변화의 행위자로서 역량을 강화 시키고자 합니다.

선출 또는 임명 학부모 리더로서 위원회 멤버는 높은 수준의 윤리, 정직성 및 예절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회 멤버는 활동하는 위원회와 커뮤니티에서 모범을 보이고 담당하는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본 규정을 이행함에 더해 위원회 멤버는 반드시 위원회 멤버로서의 자신의 역할과 관련된 모든 법률, 세칙, 규칙 또는 규정, 표준, 지시 및 합의를 준수해야 합니다.

정의

다음의 용어들은 본 규정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1. CCEC 는 커뮤니티 학군 교육 위원회 및/또는 뉴욕시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2. 위원회 멤버는 32 개 커뮤니티 학군 교육 위원회 또는 다음 4 개의 뉴욕시 위원회 중 하나의 선출 또는 임명 멤버를 의미합니다: 뉴욕시 고등학교 위원회, 뉴욕시 특수교육 위원회, 뉴욕시 영어학습학생 위원회, 뉴욕시 75 학군 위원회.
3. 품행은 다음의 상황에서 위원회 멤버의 구두 및 서면 언어의 사용을 포함한 언어 및 물리적 행동과 행실을 의미합니다: (a) CCEC 회의, (b) CCEC 주최 행사, (c) CCEC 선거 및 캠페인, (d) 위원회 멤버가 공식 자격으로 참석한 공개 석상과 행사 (e) 이러한 품행이 위원회 멤버가 활동하는 학군 또는 학교 커뮤니티에 방해가 될 위험을 형성하거나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및/또는 CCEC 또는 위원회 멤버의 CCEC 책임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기타 활동.
4. FACE 는 교육청의 가정 및 커뮤니티 역량강화 담당실로 뉴욕시 학교의 학부모 운영 구조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팀입니다.
5. 공평 이행 담당관(Equity Compliance Officer, "ECO")은 본 규정의 위반 주장의 접수, 답변, 처리 및 조사를 책임지는 교육청 직원입니다.
6. FACE 공평 위원회("공평 위원회")는 FACE 가 임명한 위원회 및 교육감 학부모 자문 위원회의 학부모 리더 팀으로 ECO 채용 및 잔류에 대한 추천을 FACE 에 제공하고 ECO 에게 접수된 불만 제기의 해결에 대한 추천할 수 있습니다.
7. 학부모란 부모(출산 또는 입양, 의붓 부모 또는 양부모로서), 법률적인 보호자 또는 아이와 부모와 같은 관계를 맺고 있는 성인입니다. 아동을 양육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대신에 정기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고 관리할 직접적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8. 개인 식별 정보는 이름, 나이, 자택 또는 직장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시민권 상태, 인종 또는 종교적 소속, 고용주 또는 고용 상태,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 이름, 자녀의 교육 배정 또는 프로그램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9. OSI 는 뉴욕시 교육청 특별조사 담당실(Office of Special Investigations)입니다.
10. SCI 는 뉴욕시 학군 조사 특별 커미셔너로 뉴욕시 학군의 비행 혐의를 조사하는 독립 기관입니다.



교육감 규정

번호: D-210

제목: 뉴욕시 및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 품행 수칙 및 불만제기 절차: 차별 방지 및
괴롭힘 방지 정책

항목: 뉴욕시 및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

발행: 2021년 12월 22일

I. 범위

- A. 본 규정 위반 행위는 연방, 주 또는 지역의 차별금지 관련법을 위반하는 수준이 아니더라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B. 위원회 멤버의 후보 출마 기간 또는 위원회 임기 시작 전을 포함해 본 규정을 위반한 위원회 멤버는 섹션 III에 명시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C. 위원회 멤버는 위원회 멤버가 관련된 경우 어떤 인물, 기관 또는 소속된 단체가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도모하거나 참여하도록 유발하거나 요청하거나 장려해서는 안 됩니다.

II. 행동수칙

- A. 교육청은 실제 또는 인지되는 인종, 피부색, 종교, 믿음, 민족, 출신 국가, 외국인 신분, 시민권 상태, 연령, 결혼 상태, 파트너십 상태, 장애, 성적 지향, 성별 및 군복무 여부를 바탕으로 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금지합니다.
- B. 위원회 멤버는 어떤 인물이나 단체를 섹션 II.A에 명시된 근거로 차별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C. 위원회 멤버는 위협적이고 타인이 개인 안전을 우려하게 되는 잦은 언어적 학대와 불필요하게 공격적인 언사를 포함하고 이에 국한되지 않은 괴롭힘, 위협 또는 협박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 D. 교육청은 아이들에 대한 무례함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위원회 멤버는 교육청

D-210 – 뉴욕시 및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 품행 수칙 및 불만제기 절차: 차별 방지 및 괴롭힘 방지 정책 – 2021/12/22

학생에 대한 경멸스럽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포함하는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 E. 위원회 멤버는 교육청 학생이나 학생 가족에 대한 사적 또는 개인 식별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 공유 또는 폭로하는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 F. 위원회 멤버는 위원회 멤버 직위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이메일 리스트, listserv,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계정 또는 기타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이용하여 타인에 대한 허위 발언을 하거나 개인적 혜택이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 후보 또는 후보군을 지지하면 안됩니다.
- G. 위원회 멤버는 반드시 위원회가 얻은 모든 학부모 또는 학생 연락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받고 적법한 공식적인 위원회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적 소통, 로비, 캠페인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H. 위원회 멤버는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본인, 가족 또는 본인이 사업이나 재무 관계를 맺고 있는 기타 개인이나 회사에 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 I. 위원회 멤버는 본 규정을 숙지할 의무가 있으며, FACE에서 뉴욕주 교육법 섹션 2590-e(7)에 의거하여 개최하는 모든 연수 및 교육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III. 교정 및 처벌

위원회 멤버의 행위가 본 규정 위반이거나 기타 관련법, 세칙, 규칙, 규정이나 표준, 지시 및 동의에 어긋날 때 교정이나 처벌 조치가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교정 및 처벌 조치는 교육법 섹션 2590-1에 의거하여 실시되어야 하며, 부적절한 행위 중지 명령이나 필요한 조치 시행, 또는 정직이나 해임 등의 조치 등이 포함되나 반드시 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원직에서 해임된 위원회 멤버는 차후 그 어떤 위원회나 학교 또는 학군 타이틀 I 학부모 자문 위원회 활동이 금지됩니다.

IV. 이의제기 절차

A. 이의제기 접수

1. 다음 중 한가지의 방법으로 본 규정의 위반 혐의에 대해 ECO에게

D-210 – 뉴욕시 및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 품행 수칙 및 불만제기 절차: 차별 방지 및 괴롭힘 방지 정책 – 2021/12/22

이의제기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링크 추후 안내]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접수 양식, ECO에게 이메일, 전화, 우편 또는 본 규정 끝에 제공된 전화번호나 주소로 직접 접수.

2. 반드시 이의제기인의 이름이 명시되고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익명의 이의제기는 받지 않습니다.
3. 본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한 이의제기는 반드시 의심되는 사건으로부터 역일 기준 60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4. 이의제기 절차에서 언어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교육감 규정 A-663에 따라 제공됩니다.
5. 또한 본 규정의 위반에 대해 SCI에 직접 이의제기를 접수할 있습니다: <https://nycsci.org/online-complaint-form/> 또는 전화 212-510-1400.
6. 부패, 범죄 활동 또는 이해 상충의 혐의가 있는 ECO에게 접수된 이의제기 사안은 SCI에게 전달되며 범죄 활동에 연루된 경우 뉴욕시 경찰청에 전달됩니다.

B. 초기 대응

1. ECO는 접수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2일 이내에 고발인에게 서면으로 접수되었음을 알립니다. ECO는 FACE 공평 위원회에 이의제기의 사본을 제공합니다.
2. 이의제기 사안은 FACE에 보관됩니다. 섹션 IV.C.3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의제기 및 조사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3. ECO가 공평 위원회와 상의하여 혐의 행위가 범죄와 관련되었거나 학생 또는 교육청 직원의 안전이나 안녕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거나 뉴욕시 학군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ECO는 교육감에게 이의제기의 조사가 완료되기 전 이의제기의 대상이 되는 위원회 멤버를 정직시키거나 해임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C. 이의제기 내용 조사 절차

1. 이의제기 접수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3일 이내에 ECO는 이의제기 사안이 본 규정에 금지되어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검토합니다.
2. ECO가 이의제기 사안이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결정하면 ECO는 관계자 및 목격자를 인터뷰하고 관련 증거를 검토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

D-210 – 뉴욕시 및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 품행 수칙 및 불만제기 절차: 차별 방지 및 괴롭힘 방지 정책 – 2021/12/22

이의제기의 대상은 혐의에 답할 권리가 있습니다. ECO는 이의제기 접수일로부터 역일 기준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3. 본 규정에 따라 신고된 내용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 및 목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것이 교육청의 정책입니다. 그러나 비밀보장의 필요성은 반드시 필수 조사를 실시하고 협조할 의무, 대상에게 적법 절차를 제공할 의무 및/또는 신고 내용을 완화하거나 해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과 형평성이 맞아야 합니다. 그러나 비밀보장의 필요성은 반드시 필수 조사를 실시하고 협조할 의무, 대상에게 적법 절차를 제공할 의무 및/또는 신고 내용을 완화하거나 해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과 형평성이 맞아야 합니다.
4. 조사 후 ECO는 공평 위원회에 조사 결과와 본 규정 위반 발생 여부 및 추천된 교정 또는 징계 행위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평 위원회는 조사 결과와 추천을 검토하고 역일 기준 10일 이내에 ECO에게 추천을 제시해야 합니다.
5. ECO와 공평 위원회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 ECO의 추천이 적용됩니다.

D. 결정

1.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ECO가 이의제기를 접수하고 역일 기준 60일 이내에 ECO는 교육감에게 본 규정 위반 여부와 적절한 교정 또는 징계 조치에 대한 추천을 교육감에게 제공합니다.
2. ECO의 추천을 받고 업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규정 위반 여부와 적절한 교정 또는 징계 조치에 대한 서면 결정을 발표합니다. 신고인 및 대상은 서면으로 결정에 대해 통보받습니다.

E. 완화 기회

1. 교정 또는 징계 조치 이행 전 조치의 대상이 되는 위원회 멤버는 교육감 결정의 역일 기준 10일 이내에 교육감 또는 교육감의 대리인으로부터 완화의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2. 교육감은 다음의 경우 완화의 기회 없이 위원회 멤버를 정직시키거나 해임할 수 있습니다:
 - a. 범죄 행위
 - b. 학생 또는 교육청 직원의 안전이나 안녕에 즉각적인 위협
 - c. 뉴욕시 학군의 이익에 반한다고 교육감이 판단한 경우

V. 보복

차별에 반대하거나 본 규정에 따라 차별이나 괴롭힘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거나 본 규정의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접수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개인에 대한 보복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뉴욕시 교육청의 정책입니다. 이와 같은 활동 참여로 인해 개인에게 가해지는 모든 부정적 행위는 보복으로 간주됩니다.

VI. 연례 검토

본 규정은 ECO와 공평 위원회에서 매년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을 준수하여 갱신합니다.

VII. 문의

본 규정 관련 문의:

Office of Family and Community Empowerment
N.Y.C. Department of Education
52 Chambers Street - Room 405
New York, NY 10007
전화: 212-374-4118
이메일: FACE@schools.nyc.gov

공평 이행 담당관
N.Y.C. Department of Education
52 Chambers Street – Room [향후 결정]
New York, NY 10007
전화: [향후 결정]
이메일: [향후 결정]